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b>제3조(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b>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을 구분하여 운용한다.</p>	<p><b>제3조(지원자금의 구분)</b>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을 구분하여 운용한다.</p>	<p>- 자구 수정</p>
<p><b>제4조(지원대상 업체)</b>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 업체는 &lt;별표1&gt;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으로 한다.</p> <p>1. ~ 13. (생략)</p>	<p><b>제4조(지원대상)</b> ①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배정하며,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인정기준은 &lt;별표 1&gt;과 같다.</p> <p>1. ~ 1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p> <p>1.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p> <p>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p> <p>3.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p> <p>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다만, 이차보전대출은 지원 가능)</p> <p>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p> <p>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p> <p>7. 부동산업, 유흥업 등 &lt;별표2&gt;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p>	<p>-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지원대상업체의 대출실적에 따라 배정된다는 점을 명시</p> <p>- 제10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를 제4조제2항으로 이동</p>
<p><b>제5조(전략지원부문)</b> ① 제4조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한국표준산업분류 01~03 영위기업에 한함)의 지원대상업체 중 <u>관할지역</u>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이하 “대구경북본부”라 한다)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p> <p>②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p> <p>③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15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30억원)</p> <p>④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및 업종 제한은 제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p>	<p><b>제5조(전략지원부문)</b> ①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한국표준산업분류 01~03 영위기업에 한함)의 지원대상업체 중 <u>대구경북본부 관할지역</u>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을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p> <p>②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③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되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1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대출실적 전액을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일반지원한도로 50% 이내에서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제한은 제6조제4항을 따른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p>	<p>- 자구 수정</p> <p>- 항 순서 조정</p> <p>- 제2항, 제3항, 제4항의 내용을 통합, 항 번호 조정</p> <p>- 자구 수정 및 업종 제한 문구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⑦ 제6항에 따라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p>	<p>⑤ 제4항에 따라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3항에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p>	<p>- 항 번호 조정</p>
<p><b>제6조(특별지원부문)</b> ① 제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 중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대구경북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실적 및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p> <p>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p> <p>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p> <p>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성중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변호사업(71101업종), 변리사업(71102업종), 공인회계사업(71201업종), 세무사업(71202업종), 병원(861업종) 및 의원(862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p>	<p><b>제6조(특별지원부문)</b> 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 중 대구경북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취급실적 및 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로 한정한다.</p> <p>③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되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④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성중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 삭제 &gt;</p> <p>⑤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대출실적 전액을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일반지원한도로 50% 이내에서 비례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p>	<p>- 자구 수정</p> <p>- 자구 수정 및 중복내용 삭제</p> <p>- 제3항과 제4항의 내용을 통합하고 전략지원부문과의 중복수해 방지조항 삽입</p> <p>- 자구 수정, 중복내용 삭제 및 항 번호 조정</p> <p>- &lt;별표 2&gt; 배정 제외업종으로 이동</p> <p>- 자구 수정 및 항 번호 조정</p>
<p><b>제7조(일반지원부문)</b> 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p> <p>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p> <p>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비례배정한다.</p> <p>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7.5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15억원)</p> <p>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⑥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p>	<p><b>제7조(일반지원부문)</b> ①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을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p> <p>② 전체 한도 중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p> <p>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례 배정하되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7.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제6조제4항의 신용등급 제한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p>	<p>- 자구 수정</p> <p>- 자구 수정</p> <p>- 제3항, 제4항, 제5항의 내용을 통합</p> <p>- 항 번호 조정 및 업종 제한 문구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p>	<p>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p>	<p>- 항 번호 조정</p>
<p><b>제8조(지원일몰제도)</b> ①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대출의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p> <p>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p> <p>④ (생략)</p>	<p><b>제8조(지원기간 및 지원일몰제도)</b> ①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시설자금대출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특정 업체에 대한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대출 실적에는 2년간 신규 지원자금을 배정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업체에 대한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누적금액은 2007년 1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한 신규지원을 재개할 경우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 자구 수정</p> <p>- 자구 수정</p> <p>- 자구 수정</p>
<p><b>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li> <li>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li> <li>3.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li> <li>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다만, 이차보전대출은 지원 가능)</li> <li>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li> <li>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li> <li>7. 부동산업, 유흥업 등 &lt;별표2&gt;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li> </ol>	<p>&lt;삭제&gt;</p>	<p>- 제4조제2항으로 이동</p>

현행	개정 (안)	비고																
<p><b>제11조(자료제출)</b> ① 금융기관이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0일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국내특허기술 사용 확인서 &lt;별지 제5호 서식&gt;</p> <p>6.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p> <p>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lt;별지 제4호 서식&gt;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b>제10조(자료제출)</b> ① 금융기관이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0일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5.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p> <p>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 또는 최종 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b>제1항제4호에 따라</b>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본부장은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보고서 및 자료의 제출이 누락·지연될 경우 해당 대출실적을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 국내특허기술 사용 확인서 서식 삭제</p> <p>- 자구 수정</p> <p>- 자료제출 누락·지연에 대한 배정제외 근거 마련</p>																
<p><b>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b>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p>	<p><b>제11조(지원자금의 회수 및 배정)</b>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0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p>	<p>- 자구 수정</p>																
<p><b>제13조(제재)</b>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위규사유별로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 이내에서 배정 한도 감축</p> <table border="1" data-bbox="181 1094 954 1249"> <thead> <tr> <th>위규 사유</th> <th>한도감축 배수</th> </tr> </thead> <tbody> <tr> <td>대기업<sup>1)</sup>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td> <td>2.5배 이내</td> </tr> <tr> <td>폐업업체에 대한 대출</td> <td>1.5배 이내<sup>2)</sup></td> </tr> <tr> <td>최종 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td> <td>2.0배 이내</td> </tr> </tbody> </table> <p>주: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p> <p>② (생략)</p>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sup>1)</sup>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sup>2)</sup>	최종 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p><b>제12조(제재)</b> ① 본부장은 제10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위규사유별로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 이내에서 배정 한도 감축</p> <table border="1" data-bbox="994 1094 1767 1275"> <thead> <tr> <th>위규 사유</th> <th>한도감축 배수</th> </tr> </thead> <tbody> <tr> <td>대기업<sup>1)</sup>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td> <td>2.5배 이내</td> </tr> <tr> <td>폐업업체에 대한 대출</td> <td>1.5배 이내<sup>2)</sup></td> </tr> <tr> <td>최종 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기타 배정 관련 서류 허위·착오 제출 등</td> <td>2.0배 이내</td> </tr> </tbody> </table> <p>주: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 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p> <p>② (현행과 같음)</p>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sup>1)</sup>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sup>2)</sup>	최종 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기타 배정 관련 서류 허위·착오 제출 등	2.0배 이내	<p>- 배정 관련 서류의 허위·착오 제출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p>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sup>1)</sup>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sup>2)</sup>																	
최종 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sup>1)</sup>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sup>2)</sup>																	
최종 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기타 배정 관련 서류 허위·착오 제출 등	2.0배 이내																	

현행		개정(안)	비고			
< 신설 >		부칙 (2023. 3. 23)	-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2023년 6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득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b>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b>		<별표 1> <b>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b>				
전산코드	지원부문 <sup>1)</sup>	선정기준 <sup>2)</sup>	전산코드	지원부문 <sup>1)</sup>	선정기준 <sup>2)</sup>	
A2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벤처기업 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A2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등)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근거법령 정비 및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추가
A3	혁신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한 기업(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국제특허 출원·등록 기업 및 생산활동에 사용중인 국내특허 보유기업(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기술신용평가기관(은행자재 TCB포함)이 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TCB)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대출을 취급한 기업으로 평가대상 기술을 생산활동에 사용중인 기업(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하며 기술평가등급(T) 3등급 이상을 요건으로 함)	A3	혁신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한 기업(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국제특허 출원·등록 기업 및 생산활동에 사용중인 국내특허 <sup>3)</sup> 보유기업(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기술신용평가기관(은행자재 TCB포함)이 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TCB)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대출을 취급한 기업으로 평가대상 기술을 생산활동에 사용중인 기업(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하며 기술평가등급(T) 3등급 이상을 요건으로 함)	- 국내특허 보유기업의 지원요건 강화
A4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EDP) 인증제품 생산 중소기업 < 신설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제품 생산기업	A4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EDP) 인증제품 생산 중소기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제품 생산기업	- 지원대상 추가
A6	추천기업 <sup>3)</sup>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지역 상공회의소 선정기업(스타기업, 선도중소기업,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 대구3030기업, 세계일류 중소기업, 프라이드기업, 대구산업대상 수상기업 등)(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서 조성한 물류유통단지 입주기업(해당 시·도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입주확정기업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브랜드 K) 인증기업	A6	추천기업 <sup>4)</sup>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지역 상공회의소 선정기업(Pre-스타기업, 스타기업, 리딩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프라이드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대구산업대상 수상기업 등)(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삭제 >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입주확정기업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브랜드 K) 인증기업	- 지원대상 추가 - 지원대상 제외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또는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영위 업체 중 자체 브랜드제품(상표등록증 보유)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 -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공동상표(OLLST 등), 지역공동브랜드(쉬메릭, 실라리안) 사용기업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또는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영위 업체 중 자체 브랜드제품(상표등록증 보유)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 -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공동상표(OLLST 등), 지역공동브랜드(쉬메릭, 실라리안) 사용기업	





현행			개정 (안)			비고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업종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업종	
기타 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 삭제 >	- 지원대상 제외
	10792	차류 가공업			< 삭제 >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삭제 >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 삭제 >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09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삭제 >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23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191	고무패킹류 제조업	22191	22191	고무패킹류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2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삭제 >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1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23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24191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9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1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2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1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5923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4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5929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삭제 >	- 지원대상 제외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삭제 >	- 지원대상 제외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 삭제 >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2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1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202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삭제 >	- 지원대상 제외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9120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 삭제 >	- 지원대상 제외
	29133	탱크,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29133	탱크,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1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85503	온라인 교육학원			< 삭제 >	- 지원대상 제외	

현행		개정 (안)		비고	
<별표 2> <b>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b>		<별표 2> <b>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b>			
<b>업종명</b>	<b>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b>	<b>업종명</b>	<b>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sup>1)</sup></b>		
주점업	(생략)	주점업 <sup>2)</sup>	(현행과 같음)		
금융관련업	(생략)	금융 및 보험업	(현행과 같음)		
부동산업	(생략)	부동산업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전문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5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특별 및 일반지원부문에만 적용되었던 일부 지원 제외업종을 전 부문으로 확대 적용	
<신설>	<신설>	수의업	731 수의업		
<신설>	<신설>	보건업	861 병원 862 의원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69 기타 보건업		
도박장	(생략)	도박장	(현행과 같음)		
무도장	(생략)	무도장	(현행과 같음)		
미용업	(생략)	미용업	(현행과 같음)		
안마업	(생략)	안마업	(현행과 같음)		
주: 1) 배정 제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소분류로 표기된 경우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세세분류 범위 업종은 모두 배정 제외업종에 해당 2) 상호명에 '포차'·'대표'·'호프'·'바'·'맥주'·'비어' 등이 포함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업종에 대한 구체적 설명 추가